

10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48호 2000. 2. 18

개 정 이 유

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개정('99. 12. 28. 법률 제6,064호)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축법등 적용의 특례 대상건축물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례의 상·하한을 정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기준을 새로이 정함.
- 나. 법률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분양주택의 공급대상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이주민이 포함되어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.
- 다. 분양주택의 규모를 세대당 85제곱미터를 원칙으로 하되, 원활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.